

진술인 의견서

이 인 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적극 찬성함. 다만, 깊이 있는 심사가 절대적으로 요망됨.

○ 지난 제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5년여에 걸쳐 일반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증하여 왔고 그에 따른 입법의 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미결에 그쳤음. 올해 6월의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몇 가지 중요 쟁점에 대해 분석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도 대단히 중요함. 개인정보보호법이 미칠 심각한 사회적 파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자칫 '보호'의 허울 좋은 명분에만 치우쳐 '이용'의 현실적 가치를 무시하는 우를 범한다면, 제정됨만 못할 것임.

2.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생활비밀보호법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타인에 관한 정보(개인정보)의 처리(=수집·가공·이용·제공)는 국가사회가 기능하기 위한 필수조건임

- 국가를 비롯한 어떤 조직이든지 그 구성원들에 관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지 않으면 그 조직이 유지될 수 없음
- 또한, 타인과의 거래에서는 그 타인에 관한 일정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수집되고 처리됨. 그것이 정부와의 거래(세금부과, 범죄수사, 복지혜택지급 등 일체의 상호작용관계)이든 기업과의 거래(서비스이용관계 등)이든 마찬가지임
- 나아가, 이러한 거래관계를 떠나서도 사회의 수많은 조직과 개인은 광범위하게 타인의 개인정보에 기초해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관련된 결정을 내림
-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가공·이용·제공)는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임

○ 개인정보보호법 이전의 사생활비밀보호법제는 아주 제한적인 범위의 개인정보를 매우 한정된 침해행태만을 규율하여 왔음

- 개인에 관한 정보 중에서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은밀한 사적 정보”(private fact)나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를 부당하게 “공표”(public disclosure)하거나 “누설”(divulge)하는 행위를 민사적 또는 형사적으로 규율하여 왔음. 전통적인 민사상의 프라이버시침해법리나 형법 규정(제316조; 제317조) 참조.
- 또한, 비밀스러운 사적 통신에 침입하여 정보를 “도청”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되어 왔음
- 그러나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가공·제공 혹은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달리 규율하지 않았음

○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가공·제공 혹은 공유”하는 행위를 새롭게 규율하고자 하는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밀보호법으로 착각해서는 안 됨. 양 법제는 그 입법목적, 규율대상의 범위, 규율의 방식이 다른 것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입법목적	비밀보호법	현실적으로 발생한 해악(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자 함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처리의 오·남용을 사전에 막음으로써 정보주체의 다양한 범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규율대상	비밀보호법	사생활평온을 깨뜨리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DB의 형태로 처리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과정
규율방식	비밀보호법	침해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위반에 대해 민사적 또는 형사적 제재를 가함
	개인정보보호법	공정한 개인정보처리의 기준 설정, 정보처리과정에서의 정보주체의 참여 보장, 감독기구에 의한 감시·고충처리·교육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수집·이용·제공)를 막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있음

- 외국의 모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점을 목적조항에서 명시하고 있음

독일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는 개인정보가 저장, 전달, 수정 및 처리되는 과정에서 잘못 이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다른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이 법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음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목적) : “이 법률은 고도정보통신사회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이 현저하게 확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과 관련하여 기본이념 및 정부에 의한 기본방침의 작성 기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면서도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95/46/EC)	제1조(이 지침의 목적) : “1. 이 지침에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연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특히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 with respec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을 보호하여야 한다. 2. 회원국들은 위 제1항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보호와 관련된 이유를 들어 회원국 사이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the free flow of personal data between Member States) 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 정부안은 제1조 목적조항에서부터 방향성을 다소 잃은 것으로 보임
-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용’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두 건의 의원안은 목적조항에서 ‘이용’과 ‘보호’의 가치를 조화하고자 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평가됨

3. 제출된 3개의 법률안은 ‘일반법’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기존 민간부문의 일부 영역에 매우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거의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임.
- 정보통신망(일부 오프라인 포함)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대해 거의 절대적인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과 무거운 법정형의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있음

수집	<p>[원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사전에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제22조 제1항)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1조 제1호)</p> <p>[한정된 예외] ①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2조 제2항)</p>
----	---

제공	<p>[원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제24조의2 제1항)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1조 제3호)</p> <p>[한정된 예외] ①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4조의2 제1항)</p>
	<p>※ 형법의 비밀침해죄 : ‘비밀장치에 의해 보존되어 있는 정보’를 그 비밀장치를 깨고 열어 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316)</p> <p>※ 형법의 업무상비밀누설죄 :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주고받은 의뢰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317)</p> <p>※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전정보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외부유출에 대해 2년 이하 징역(§18)</p>

- 유럽연합의 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지침(2002/58/EC)이 특별히 규율하는 내용은 제한적임 : 통신비밀의 보장(§5), 통신사실확인자료(traffic data)의 보호(§6), 위치정보의 보호(§9), 스팸메일에 대한 opt-in 방식(§13)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호	통신의 전송 목적을 위해 처리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위치정보의 보호	익명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동의를 얻기 전에 사전고지(처리대상 위치정보의 종류, 처리의 목적 및 기간, 부가가치서비스의 제공목적에서 당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의 의무를 지우며,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함
	<p>※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합법성 요건으로 하는 경우는 위 두 경우임</p> <p>※ 우리나라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합법성의 기본 요건으로 함(제15조 제1항)</p>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위협성이 높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는 ‘이용’의 가치보다는 ‘보호’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일반법에서 무턱대고 ‘강력한 보호’를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음
- 입법에 있어서 규율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한 상충하는 가치들이 정확한 형량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입법을 해야 하며 ‘점진적인 개선의 접근방법’을 사용해야 함

4. 규율대상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처리’에 한정되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이 막고자 하는 개인정보 오·남용의 문제는 개인정보파일 또는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용과 관련해서 일어남

-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들은 하나 같이 그 적용범위를 개인정보파일(수기파일 포함)에 의하여 처리되는 또는 처리될 개인정보에 한정하고 있음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	“이 지침은 그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동수단(automatic means)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기록의 처리에, 그리고 자동수단 이외의 방식에 의한 개인기록의 처리가 개인기록파일링시스템의 일부를 이루고 있거나 또는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개인기록의 처리에 적용된다.” (§3①)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이 법률에서 개인정보취급사업자라 함은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을 사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③)
우리의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2-7)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2-4) <※전자적 파일에 국한>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2-5)

○ 이 점에 있어, 정부안이 타당함; 두 개의 의원안은 개인정보파일의 개념을 가지고는 있으나 법률의 적용범위를 여기에 한정지우고 있지 않음

정부안(§2)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이혜훈안(§2)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변재일안(§2)	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 ‘개별적인 수집·이용·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대상이 될 필요가 없고 또 그러해서도 안 됨. 그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다만 그 행위의 태양이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친 경우에는 민사 불법행위의 일반 법리에 의해서 규율되어지게 됨

- 일반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특정 개인을 추적·감시(tracing & surveillance)하여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면 그 추적·감시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것임
- 특정 개인의 숨기고 싶은 은밀한 비밀을 제3자에게 알려(제3자 제공) 그 개인의 사생활 내지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도 또한 민사상의 불

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것임

5. 개인정보처리의 합법성 기준에 대한 평가

(1) 수집 · 이용 · 제공의 허용요건에 대한 평가

○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불법화하는 것은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잃은 매우 위험한 사고임

-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인격적 징표이지만 그 인격적 징표 그 자체를 가두어두고 보호하려고 해서는 안 됨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생활비밀보호법이 아님)
- 사회의 존립과 기능유지는 많은 경우 타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초하고 있음. 그리고 타인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의 인격적 징표가 유통될 수 있어야 함. 만일 개인정보를 인격적 징표라는 이유만으로, 그리하여 마치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유통의 금지를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오해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인격적 징표의 유통을 금지하고자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는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임. 그 궁극적 결과는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의 마비 내지 위축으로 나타날 것임이 분명함
- 그 동안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사법제와 형사법제로서 명예훼손법과 사생활보호법이 존재하여 왔음. 또 최근에는 개인의 성명과 초상을 보호하는 법원의 판례가 나오기도 함. 그러나 이들 법제와 판례법은 엄정한 이익형량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임.

○ 일반개인정보 수집 · 이용의 허용요건

정부안	§15①: 허용요건 6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 영국, 독일처럼 정보주체의 동의를 여러 합법성요건 중의 하나로 병렬적으로 제시함 - 동의 없더라도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 · 이용을 허용함 - 타당하고 균형 잡힌 법적 기준이라고 평가됨; 다만, 6호의 형량기준이 유럽보다 엄격함; 4조 2호는 오해 소지, 삭제 ※ [6호 수정대안: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수집 · 이용을 금지시켜야 할 정보주체의 이익이 더 우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이해훈안	§8①(동의원칙) ②(예외)	- ①(사전동의원칙); ②(예외) => 규정방식은 정부안이 타당 - '공공기관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가 빠져 있음
변재일안	§7①: 허용요건 6가지	- 5호의 가, 나, 다목은 불필요; 대통령령 위임 불필요 - 6호의 대통령령 위임 불필요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 지침 (영국거의 동일)	§7	<p>“일반개인정보”의 처리(=수집·이용·제공)가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한 요건</p> <p>(a) 정보주체가 명확하게(unambiguously) 동의를 한 때; 또는</p> <p>(b) 정보주체가 한 쪽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또는 계약체결에 앞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또는</p> <p>(c)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또는</p> <p>(d)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vital interests)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또는</p> <p>(e)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게 주어진 공적 권한(official authority)의 행사를 위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또는</p> <p>(f) 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때. 다만, 그러한 이익보다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를 보호해야 하는 이익이 더 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독일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28 §29	<p>- 공공부문(2장)과 민간부문(3장)의 허용기준 각각 별도의 장에서 달리 규정</p> <p>- 민간부문: 민간기관이 자신이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제28조)와 광고, 정보제공서비스, 상업적인 주소목록작성 등 처음부터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제29조)로 나누어 달리 기준을 설정함</p> <p>☞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한 처리(=수집·이용·제공)의 기준: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없음(§28①); 다만, ① 목적 명시 ② 필요한 범위 내 처리 ③ 처리를 금지시켜야 할 압도적인 정보주체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음</p> <p>☞ 제3자 제공목적의 수집·기록의 기준(§29): (i)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 저장, 수정되지 못하게 할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에게 있다고 불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야 함; 이 경우 동의 없이 수집·기록 가능 (ii)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출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그 수집을 금지시켜야 할 압도적인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에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기록 가능</p>
일본 개인정보법	§15 §16	<p>- 자체적인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허용; 다만, 이용목적을 특정하도록 하고(§15)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하는 요건과 고지의무를 부과함</p> <p>- 유럽과 달리, 정당한 업무수행의 이익과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의 이익 사이의 형량을 달리 요구하고 있지 않음</p> <p>- 목적 외 이용의 원칙적 금지(§16①); 다만, 4가지 예외(§16③)</p>

○ 일반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허용요건

	사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서비스업자(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의 인물정보서비스, 법조인대관 출판)나 신용정보업자는 제3자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그 정보를 원하는 고객이나 의뢰인에게 제공함 - 기업의 홍보나 광고 또는 여론조사를 위한 목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함
마케팅 / 정보 제공 서비스 목적의 개인정보처리	긍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의 사회적 효용은 새삼 거론 불필요 - 직접 마케팅(direct marketing) 방식은 판매자(marketer)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임. 마케팅의 효과를 직접 측정할 수 있기 때문. - 만일 고객에 관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면 그 고객에 대한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스팸의 문제가 일정한 정도 해결될 수도 있음
	부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의 광고메일이 원치 않는 고객에게 무작위로 전달됨에 따라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고 있음. 원치 않는 광고메일(spam)에 의한 고객의 불쾌감이나 사생활의 평온 방해 외에도 그 처리에 드는 시간낭비의 해악이 발생함 - 고객에 관한 상세하고 정확한 개인정보의 보유와 유통은 고객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입법적 대응방안		<p>첫째,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를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는 결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음. 마케팅 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 한 그것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를 불법화할 수는 없음.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p> <p>둘째, 정보주체에게 일정한 통제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통제권을 주더라도,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시킬 것인지(opt-in 방식), 아니면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의 처리(=수집·이용·제공)를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거부권)를 줄 것인지(opt-out 방식)를 나누어 고려할 수 있음. 유럽과 일본은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p> <p>셋째, opt-out 방식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마케팅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특히 민감개인정보의 처리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함.</p> <p>넷째, 자신의 마케팅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타인의 마케팅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구별하여 달리 규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음</p>

정부안	§1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 제공을 유럽이나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비교하여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의 유통을 막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 사회적 파장은 크고 심각할 것으로 보임 - 제3자 제공의 일반적 허용기준(§17①); 예외적 허용(§18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제15조 제1항의 제2, 3, 5호와 연결하여 법률문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의미내용이나 취지가 애매할 뿐만 아니라 규정 상호간의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음
-----	---------	--

	<p>(ii)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나 제3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공 혹은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임. 유일하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opt-in 방식). 이는 세계 유례가 없는 입법임. 그러면서도 공공기관의 제3자 제공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의하면, 마케팅 목적의 제공이나 정보제공서비스(인물정보서비스 등)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으면 곧 불법, 5년 이하 징역(§60-1,2); 심지어, 판매계약에 따른 상품의 배송을 위해 제3자인 배송업자에게 주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전 동의 없으면 5년 이하 징역 - 특별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정보업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시킨다고 하는 것은 입법체계상으로도 전혀 균형이 맞지 않은 입법임
--	--

<p>유럽 연합 개인 정보 보호지침</p>	<p>- 제3자 제공의 허용기준을 일반개인정보와 민감개인정보로 나누어 규정</p> <p>(i) 일반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함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넓게 허용하되, 다만 정보주체에게 사후에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object)를 주고 있음 : “opt-out 방식(사후거부방식)”에 의한 정보주체의 통제권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부권의 행사요건을 일반적인 목적의 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의 경우와 직접마케팅 목적의 정보처리의 경우를 나누어 달리 규정. 후자의 경우에는 조건 없는 거부권의 행사를 인정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제14조 (정보처리에 대한 거부권: right to object) 정보주체는</p> <p>(a) 적어도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자신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제7조 e호 및 f호)], 언제든지 자신의 특별한 상황과 연관된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서(at any time on compelling legitimate grounds relating to his particular situation) 자신에 관한 정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이와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정당한 거부(a justified objection)가 있는 경우에, 당해 개인정보처리기관이 하고 있는 정보처리에서 거부 요청된 정보가 더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p> <p>(b)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목적으로 처리될 것이 예상되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처리를, 비용부담 없이 신청에 의하여, 거부할 권리를 가지거나, 아니면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목적으로 제3자에게 최초로 제공되기 전이나 자체적으로 이용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받고 그 목적의 제공이나 이용을 비용부담 없이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p> <p>회원국은 위 (b)호 제1문 소정의 권리가 있음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div> <p>(ii) 민감개인정보는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그 밖에 제3자 제공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p>
<p>독 일 연 방 개인 정 보보호법</p>	<p>- 다음의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3자 제공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일반적으로 허용됨(제28조 제1항 제1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와의 계약 또는 준계약적 신뢰관계를 위한 목적인 때 2.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그 처리나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할 압도적인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에게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때

	<p>3. 그 개인정보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인 때,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때. 다만, 그 정보처리를 배제해야 할 정보주체의 정당한 이익이 당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보다 명백히 우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도, (i)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제28조 제3항 제1호), 또는 (ii) “광고, 시장조사 그리고 여론조사를 위한 목적인 때”(제28조 제3항 제3호)에는 수집·이용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다만, 위 (ii)의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 하에서만 가능함</p> <p>이용 또는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 관한 명부형식으로 된 개인정보여야 하고, 그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a) 당해 정보주체가 그 명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b) 직업, (c) 이름, (d) 직책, (e) 대학학위, (f) 주소, 그리고 (g) 출생연도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당해 정보주체가 그 제공이나 이용을 못하게 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일체 없어야 한다.</p> <p>- 그리고 이 경우에 정보주체에게는 다음의 거부권이 주어짐(제28조 제4항)</p> <p>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광고, 시장조사 또는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한 목적의 이용 또는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광고, 시장조사 또는 여론조사의 목적으로 연락을 받았을 때,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처리자의 신원과 자신의 거부권에 대하여 통지를 받아야 한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목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자는 그 개인정보의 출처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위 제3항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게 광고, 시장조사 또는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처리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수령인은 그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위 목적으로 처리 또는 이용되지 않도록 차단시켜야 한다.</p> <p>- 민간의 기업이 광고, 정보제공서비스, 상업적인 주소목록작성, 시장조사나 여론조사를 위하여 처음부터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을 일정한 조건 하에 허용하고 있고(제29조 제1항),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제3자 제공을 다음의 경우에 허용하고 있음(제29조 제2항). 물론 이렇게 제3자 제공이 허용된 경우 정보주체에게는 당연히 거부권이 인정됨(제29조 제4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그 개인정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을 확실하게 증명하거나 또는 (b) 제28조 제3항 제3호에 열거한 개인정보가 명부형식으로 편집되어 광고 또는 시장조사나 여론조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그리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지 못하게 할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에게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때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p>- 유럽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광고나 마케팅 목적을 위하여 수집·처리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함</p> <p>- 다만, 이 때 정보주체에게는 사전 고지와 사후 거부권(right to object)을 주어 통제할 수 있도록 함. 즉, 사후에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제3자 제공을 정지한다는 조건 하에, 4가지 사항을 미리 통지 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도 제3자 제공이 가능함</p>

	<p>- 또한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제3자 제공으로 보지 않음(제23조 제4항)</p> <p>(i)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데이터의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p> <p>(ii) 합병 기타의 사유에 의한 사업의 승계에 수반하여 개인데이터가 제공되는 경우</p> <p>(iii) 개인데이터를 특정의 자와의 사이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지 및 공동으로 이용되는 개인데이터의 항목,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의 범위, 이용하는 자의 이용목적 및 당해 개인데이터의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하여 미리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본인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있는 때</p>
--	---

○ 민감개인정보 처리의 허용요건

정부안	§22	<p>- 민감개인정보의 처리(=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특별 규율</p> <p>- 유럽의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서, 일본의 경우에는 민감개인정보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음</p> <p>- 그런데 정부안은 유럽의 입법례에 비하여 이용보다 보호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음</p> <p>- 민감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예외를 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와 ② 법률의 요구나 허용이라는 두 가지 경우로 매우 좁게 설정하고 있어서 그 적용과정에서 심히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됨</p>
-----	-----	--

유럽		<p>-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들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민감정보의 처리(수집·이용·제공)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그에 대한 예외를 넓게 인정하고 있음</p> <p>- 예컨대, 독일 연방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간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p> <p>(i) 다음의 4가지 경우에는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 가능: ①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보주체나 제3자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정보주체가 스스로 명시적으로 공개한 때 ③ 법적 권리의 입증·행사·방어에 필요한 때. 다만 수집과 이용을 금지시켜야 할 압도적인 정보주체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학문적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그 학문적 이익이 수집을 금지시켜야 할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월등히 우월해야 하고, 달리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야 함(§28⑥)</p> <p>(ii) 예방의학, 의학적 진단, 치료 또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목적인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특수개인정보(주로 건강정보나 성생활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 다만, 그 정보는 의료전문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자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28⑦)</p> <p>(iii) 위 첫째와 둘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처음에 수집된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되거나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중대 범죄의 수사를 위해서 또는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은 합법적임(§28⑧)</p> <p>(iv) 정치적, 학문적, 종교적 목적이나 노동조합의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는</p>
----	--	--

	<p>그 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특수개인정보를 수집·처리·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단체 구성원들의 개인정보 또는 단체의 목적과 관련하여 정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특수개인정보에 한정된다. 그러나 특수개인정보를 단체의 외부 사람이나 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오직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하에서만 합법적인 것이 된다(\$28⑨)</p>
--	---

(2) 수집·이용·제공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평가

○ 절차적 요건의 의의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이용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합법적인 수집·이용이든 간에, 모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해서는 4가지의 절차적 요건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① 목적명시 요건, ② 품질관리 요건, ③ 고지 요건, ④ 보고 요건
- 이 4가지 요건은 개인정보처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다만 이들 요건의 입법화는 각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정부안에서 몇 가지 보완의 필요

<p>목적명시 요건의 수정대안</p>	<p>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수집·이용목적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하고, 그 명시한 목적 및 그와 합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통계적 또는 학술적 목적을 위한 추가적인 이용은 명시한 목적과 합리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p>
<p>품질관리 요건의 수정대안</p>	<p>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처리정보의 정확성)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것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고지 요건의 수정대안</p>	<p>제15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고지의 의무)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3.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범위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출처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고지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1. 고지함으로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기타의 권리에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2. 고지함으로써 당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3. 고지함으로써 당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요하는 경우</p> <p>4. 수집·이용이 법령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p>
--	--

6. 개인정보보호의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

○ 독립된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존재이유

<p>(i)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집행의 문제는 당해 정보주체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정부나 기업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추적·처리·제3자 제공 내지 공유된다는 사실에 있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정보주체가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함</p> <p>(ii) 설령 개인정보처리의 원칙 중 수집제한의 원칙과 시스템공개의 원칙이 잘 지켜져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처리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위법적인 상황을 외부자인 정보주체가 충분히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할 수도 없음. 기술적으로 복잡한 처리과정이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상황을 외부의 비전문가인 정보주체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임</p> <p>(iii) 더 나아가, 설령 그것을 정보주체가 충분히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과 주도 하에 법원을 통한 그 복잡하고 장기적인 소송절차를 밟아서 권리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님. 또한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는 언제나 사후적인 것임.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는 예방적인 권리구제가 더욱 절실히 요청됨</p> <p>(iv) 통상 개인정보DB에 의한 개인정보처리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적인 개인정보처리의 영향은 그들 모두에게 똑 같이 미칠 수 있음. 즉 위법한 개인정보처리에 따르는 피해는 대규모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지님</p> <p>(v) 공공부문에 있어서 개인정보감독기구는 그 기능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개인정보처리를 통해 얻어지는 효율성의 가치와 상충될 수밖에 없음</p>
--

○ 개인정보감독기구의 기본적 기능과 역할

-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는 7가지의 서로 연관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물론 모든 감독기구가 이 모든 역할을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들 기능이 개인정보감독기구에 의해서만 배타적으로 수행되는 것도 아님.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정부부처도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책임을 떠맡기도 함

옴부즈맨 (ombudsman)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개인정보감독기구들은 정보주체로부터의 불만이나 민원(complaints)을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그리고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기능 수행함 - 이러한 “민원의 접수·조사·해결”이라고 하는 옴부즈맨의 전통적인 기능은 모든 개인정보보호체계의 효율적인 감독기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임
감사관 (auditor)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의 조사와 해결은 그 본질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과정임 - 그러나 개인정보감독기구는 여러 정보에 근거해서 특정 개인정보처리기관의 처리행태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기관이나 특정 기술에 대하여 보다 일반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함 - 감사(audits)는 보다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민원제기에 따른 조사에 비하면 덜 대립적임
자문역 (consultant)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들은 개별 개인정보처리기관에게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언제나 조언과 자문을 행함. -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행은 법적 권한의 존부를 떠나서 개인정보감독기구가 얼마나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사후에 강제력을 발동하기보다는 사전에 안전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조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자문과 조언은 규제자와 피규제자라는 대립적 관계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대립적인 관계는 많은 비용을 요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음 - 통상 개인정보처리기관들은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게 되는지 여부를 미리 알고자 함
교육자 (educator)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기구는 보다 광범위한 교육 및 연구기능을 수행함 - 감시의 문제와 프라이버시 문제를 분석·연구하고 또 개인정보처리기관과 정보주체들을 계속해서 교육시키며 정부와 사회 전반에 걸쳐 프라이버시 보호 문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임 - 세계의 모든 감독기구는 이러한 기능을 부여받고 있으며, 다만 그 활동범위와 강도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정책조언자 (policy adviser)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대부분 개인정보감독기구에게 새로운 입법안이 프라이버시보호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등에 관하여 논평이나 조언을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예컨대, 캐나다의 공공부문 보호법인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연방 프라이버시보호청에게 그 관할 범위 내에서 특정 쟁점에 관하여 의회에게 특별 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캐나다 연방프라이버시보호청은 인구조사과정(census process)에서 항상 연방정부와 충돌과 갈등을 빚음 - 영국 정보보호청장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확대와 사기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정보공유(data-sharing)를 계획하는 정부안에 대하여 그것이 가지는 프라이버시 영향에 관하여 정책적 조언을 한 바 있음
자율규제 조정자 (negotiator)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감독기구는 민간기관의 자율규제규범인 실무규약(privacy code of practice)에 대하여 협상하는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받음 - 자율규제규범으로서의 실무규약은 비록 국가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이 실무규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상이한 부문과 영역에서 독특하게 안고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음. 실무규약은 매우 유연한 규범이며 경제상황과 기술발전의 변화에 쉽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음
집행자 (enforcer)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권한은 개인정보처리기관의 행위를 변경하도록 직접 명령하는 것으로서, 조사 및 권고기능과는 구별됨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우 당해 개인정보의 처리 중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작동 중지 명령; 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 각국의 경우 통상 집행권한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본원적 기능은 아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적어도 위 기능 중 앞의 6가지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감독기구는 집행권한을 가진 전통적인 행정기관은 아님. 또한 반드시 국가의 개인정보정책에 관한 결정기관일 필요도 없음

7. 종합의견

○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안은 일반법으로서는 개인정보의 “이용”의 가치보다 “보호”의 가치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절차적 요건에 대한 규율은 다소 소홀히 하고 있는 반면에, 이용과 제공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원칙적 요건으로 설정함으로써 필요한 개인정보의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전자정부의 핵심적인 전제로 받아들이면서 각 공공기관이 보유·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DB들의 통합·연계를 쉽게 허용하는 등 “이용”의 가치에 기울어져 있음 (전자정부법 제정법률안과 함께 검토 필요 있음)
- 전체적으로 이용과 보호의 균형이 맞지 않아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적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옴부즈맨 기능, 감사관 기능, 자문역 기능, 교육자 기능, 정책조언자 기능, 자율규제 조정자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